

2005년 제1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시험과목 : 민 법

응 시 번 호	성 명

법 원 행 정 처

【문 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문 2】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그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2005년 제1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시험과목 : 형 법

응 시 번 호	성 명

법 원 행 정 처

【 문 】 의사인 甲은 병원의 경영난으로 2005. 3. 1. 대부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의 이자 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A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乙은 甲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A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2005. 5. 1.부터 2005. 6. 30.까지 甲의 병원과 핸드폰에 500여 통의 전화를 걸어 甲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병원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甲은 2005. 7. 3. 중국 중의사 및 침구사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집한 후 그들을 중국에 데려가 응시원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브로커 丙을 알게 되어 그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생의 임상경력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甲과 丙은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 후 丙은 2005. 7. 5. 중국 현지에서 교부받은 임상경력증명서의 양식을 甲에게 건네주었고, 甲은 2005. 7. 6. 그 임상경력증명서 양식에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학습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의원직인란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동일한의원이란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긴 동일한의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동일한의원 명의의 임상경력증명서를 만든 다음 2005. 7. 8. 이를 丙에게 넘겨주었고, 丙은 2005. 7. 13.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甲은 2005. 7. 24. 임신 28주 상태인 B가 병원에 찾아와 낙태해 줄 것을 요구하자, B에 대하여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그러나 태아는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였고, 그러자 甲은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05년 제1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시험과목 :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명

법원행정처

【 문 】 검사가 작성한 당해(當該)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논하시오.

2005년 제1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시험과목 : 민사소송법

응 시 번 호	성 명

법 원 행 정 처

【문 1】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에 관하여 설명하십시오. <50점>

【문 2】 특별항고에 관하여 설명하십시오. <20점>

2005년 제1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시험과목 : 부동산등기법

응시번호	성명

법원행정처

【문 1】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중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문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005년 제1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시험과목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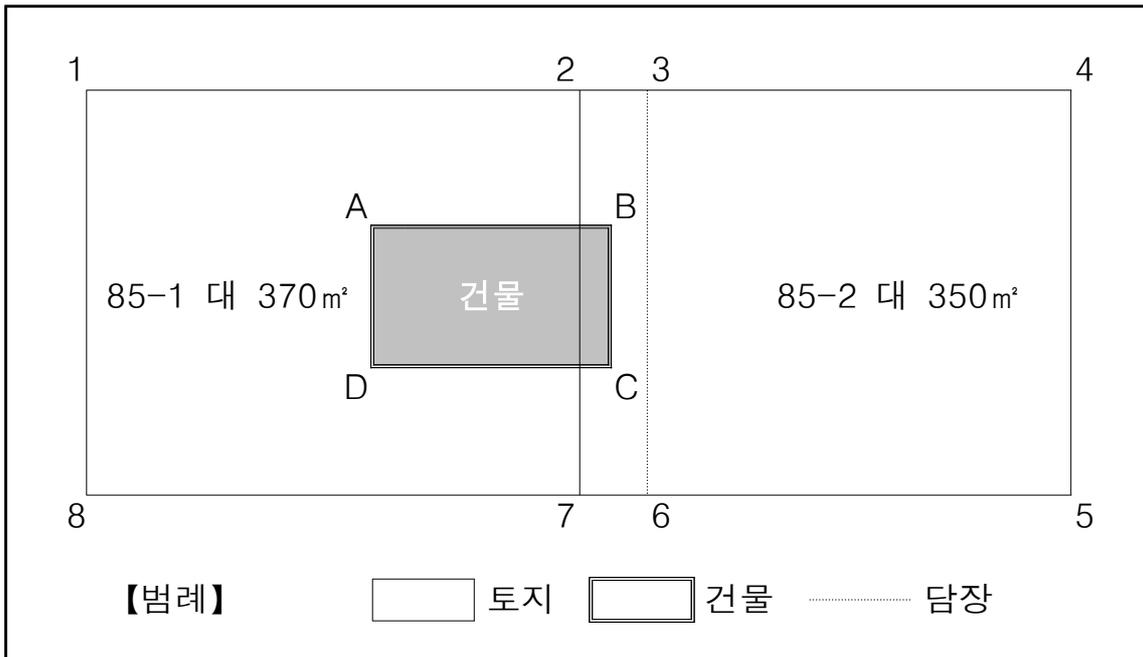
응 시 번 호	성 명

법 원 행 정 처

【 문 】 다음은 한필승(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1, 전화번호 : 02-525-4678, 주민등록번호 : 550512-1025780)이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소장 작성을 의뢰하며 진술한 내용이다.

다 음

“저는 2001. 12. 5.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1 대 370㎡ 및 그 지상 단층 건물 80㎡를 김인도라는 사람에게서 매수하여 2002. 1. 1.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래, 아래의 도면 표시 3과 6의 각 점을 연결한 점선 부분에 설치된 담장 이내의 토지를 제가 매수한 대지로 알고 점유하여 오던 중, 최근 인접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2 대 350㎡의 소유자인 유시망이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짓고자 2005. 9. 15.경 측량을 한 결과, 아래의 도면 표시 2와 7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 부분이 그 경계로 나와 위 담장과 사이의 토지 25㎡ 상당이 침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측량결과가 나오자 유시망은 위 침범 토지를 되돌려 주든지 시가를 훨씬 넘는 1㎡당 500만원에 매수하라고 요구하다 2005. 10. 1.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 2인으로 아내인 정위자와 아들 유남인이 있고, 이들은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1)

한 술 더 떠서 위 침범 토지를 되돌려 주든지 위 논현동 85-2 대지에 관하여 각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도합 금 2억원 상당의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논현동 85-1 대지 상 건물이 위 경계를 물고 있어 위 건물을 허물지 않는 한 위 침범 토지를 되돌려 줄 수도 없지만, 당초 현황을 직접 둘러본 다음 나름대로 합당한 값을 치르고 매수한 저로서는 시세의 몇 곱절이나 부담하라는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여, 여태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첨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와 같이 위 양 토지는 과거 이견집이라는 사람이 1981. 5. 5.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 대 720㎡를 분할한 것으로, 이 중 위 85-1 대 370㎡만을 매수한 이분매라는 사람이 1981. 6. 1. 등기를 경로받을 때부터 이미 위 담장이 축조되어 있었으며, 이후 1982. 2. 5.경 그 지상에 단층 건물을 신축한 이분매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위 85-1 대 370㎡ 및 그 지상 단층 건물을 매수하여 1985. 9. 1.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김인도를 거쳐, 저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위 담장을 위 양 토지의 경계로 알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별 탈 없이 각자의 토지로 알고 이웃해 오다가 이제 와 새삼스레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임에도 오히려 상대방은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나중에 또 다른 말을 못하도록 아예 판결을 받아 깔끔하게 분쟁을 매듭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 침범 토지를 확실한 제 소유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필승의 위 진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2005. 10. 9.자로 위 침범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 한필승에게 가장 실효성 있고 유리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시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되 그 밖에 자연적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고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며, 날인은 ㉠으로 표시하시오(필요할 경우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1 대 370㎡는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2 대 350㎡는 “별지목록 제2기재 토지”로, 위 도면은 “별지도면”으로 각 인용하되, 별지목록과 별지도면을 실제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또한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액을 기재하시오.(소가와 인지를 계산한 내역도 기재할 것, 위 양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는 1㎡당 200만원임)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2)

◎ 별첨 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부분 발췌),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 표 체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981년 5월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2	대	350㎡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407호에 서 이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06월 15일 전산이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 1)	소유권이전	1975년 8월 13일 제359호	1975년 7월 5일 매매	소유자 이진집 451222-12513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5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06월 15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02년 3월 8일 제4712호	2002년 2월 25일 매매	소유자 유시망 530512-1108375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0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2년 4월 30일 제19273호	2002년 4월 3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정위자 580327-2157369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2 근저당권자 김대부 610726-1217636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2	근저당권설정	2002년 7월 6일 제42851호	2002년 7월 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유남인 860109-1108387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2 근저당권자 김대부 610726-1217636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2005년 제1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시험과목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응 시 번 호	성 명

법 원 행 정 처

【 문 】 아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서를 별첨 등기부등본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첨부서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서초유통주식회사와 서울제조주식회사는 서울제조주식회사의 제품을 일정한 한도까지 서초유통주식회사에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외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초유통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에 별첨 등기부등본 을구 순위번호 1번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2. 위 계약의 내용과 같이 거래하던 중 사정이 발생하여 서초유통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갑동이 개인자격으로 서초유통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거래를 지속하되 위 근저당권은 김갑동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 채무를 계속하여 담보하도록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단, 1.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0㎡

2. 인적사항

○서초유통주식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110111-0234567

대표이사 성명 : 김갑동(600512-1043432)

대표이사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동 123

○서울제조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성명 : 이한수(510601-1035356)

대표이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56

○기타의 인적사항은 별첨 등기부등본과 같음.

3.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2005. 8. 10.임.
4. 관할등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임.
5. 위임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함.
6. 날인이 필요한 곳은 (인)이라고 표시하고 전화번호 기재는 “공란”으로 기재함.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등기신청서류작성 참조자료]

· 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140조)

등 기	기 본 세 율	비 고	기 타
부 동 산 등 기			
일반상속, 보존, 증축, 기부행위(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	가액의 8/1,000	산출금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임.	교육세: 등록세액의 20/100
농지매매, 신탁 (다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되는 신탁)	가액의 10/1,000 가액의 5/1,000		
무상, 증여, 유증	가액의 15/1,000		
일반매매, 경락, 불하, 교환	가액의 20/1,000		
농지상속,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가액의 3/1,000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액의 2/1,000		
기타(변경, 경정, 말소)	매건당 3,000원		
법 인 등 기			
설립, 증자, 합병 (상사회사, 영리법인)	금액의 4/1,000	산출금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75,000원임.	
설립, 출자, 증액(비영리법인)	가액의 2/1,000		
자산재평가	금액의 1/1,000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매건당 75,000원		
지점·분사무소의 이전	매건당 23,000원		
기타(변경, 경정, 말소)	매건당 23,000원		
상호의 설정 및 취득	매건당 45,000원		
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매건당 6,000원		

※비고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비 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류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 음	
	라. 건물표시	2,000원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 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 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 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2,000원	
13. 압류 (채납처분 등 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없 음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 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없 음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2,000원	

양식 제19-1호

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양식 제19-2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과(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3.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